



# 사례비 및 사역비 | 책정 계획 안내서

아래  
주소를 방문하여

[www.GuideStone.org/Korean](http://www.GuideStone.org/Korean)

본 자료 및 기타 다른 유용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살펴보십시오.

목회자 및 교회 직원용

  
**GuideStone**<sup>®</sup>  
Retirement Plans

*Do well. Do right.*<sup>®</sup>

#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세 가지

## 1. 사례비 책정을 계획할 때의 장점

합리적인 사례비를 책정하게 되어 교회의 한정된 재정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경비, 혜택, 직원 사례비 예산에 대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교회의 재정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 ❖ 자세한 사례비 책정 계획은 교회가 목회자와 직원들을 얼마나 소중하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 2. "단일 항목" 또는 "패키지" 접근 방법의 위험성.

사례비의 항목을 정하지 않고 단일 금액으로 지급하고 사역자들마다 알아서 항목을 정하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 ❖ 이 접근 방법은 종종 사역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기에, 사역자의 가족들에게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 ❖ 사역자가 의료비에 대한 항목을 정하여 재정을 준비 해 두지 않았을 경우, 교회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가족의 생활 위한 사역자의 실제 소득을 왜곡합니다.

## 3. 세금 법상 사역자로 인정 되는 조건.

일반적으로 안수를 받으셨거나(ordained), 자격을 취득하셨거나(licensed), 승인을 받으신 후(commissioned) 다음과 같은 사항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사역자분들은 세금 법상 사역자로 인정됩니다: 안수 집행, 종교 예배 의식 집행, 교회를 운영 할 책임이 있고, 해당 교회의 종교 지도자로 인정됨.

세금 법상 사역자는 세금과 관련해서 두가지 신분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은 소득세를 신고하실 때(Income Tax purposes)는 “고용자(employee)”로 분류되고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신고하실 때는 “자영업자(self employed)”로 보고됩니다.

- ❖ 이런 분들은 사례비에서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역자들이 Voluntary withholding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분기별 예상 세금 계산 절차(the quarterly estimated tax procedure)를 이용하셔서 분기별로 예상 되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 ❖ 이러한 분들은 교회가 지정한 주택보조비(housing allowance)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러한 분들은 반드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실 때 SECA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세금 법상 사역자가 아닌 고용자는 FICA 세금의 절반을 납부하고 고용주인 교회가 남은 반절을 부담합니다.

세금 법상 사역자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855-550-5535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당사의 전화로 요청하시면 사역자의 세금 문제와 관련된 책자와 안내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www.GuideStone.org/Korean](http://www.GuideStone.org/Korean)으로 방문하시면 위의 책자와 다른 유용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 | 사례비 책정 계획 수립하기

교회는 한정된 재정자원을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운용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재정적으로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워크북은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 워크북은 사역자와 교회 직원들의 연간 사례비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

다음 여러 장들에 걸쳐 사례비를 책정 필수 6 단계를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례비 책정 플랜을 세우시도록 돕겠습니다.

- 제1단계. 사역자의 필요를 분석(4-5 페이지).
- 제2단계. 사례비 책정 정책 서면화(6 페이지).
- 제3단계. 사역 관련 경비 분석(7-8 페이지).
- 제4단계. 고용자 혜택 결정(9-11 페이지).
- 제5단계. 개인 소득 결정(12 페이지).
- 제6단계. 사례비 책정 계획안 완료(13-14 페이지).

재정의 선한 청지기로 이런 과정을 밟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 도움을 드리고 어떤 질문에도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중부표준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855-550-5535 로 연락해 주십시오. 또한 [www.GuideStone.org/Korean/Contact](http://www.GuideStone.org/Korean/Contact)로 가시면 저희와 이메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1단계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1

## 제1단계: 사역자의 필요를 분석

각 사역자와 급여를 받는 교회직원은 다음과 같은 사례비 책정 계획안의 사본을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회는 사역자와 교회 직원들의 재정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금액을 보다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십시오.

- ❖ 별도의 언급이 있지 않는 한 모든 수치는 연간 금액이다.
- ❖ 예상 금액은 전년도 실제 금액에 바탕을 둘 수 있다.
- ❖ 음영 처리된 부분은 교회가 작성한다.

이름:	직책:	작성자: _____/_____/_____
-----	-----	------------------------

### 사례비 책정 계획안

#### 제1항: 사역 관련 경비 (예제는 7 페이지 참조)

개인 차량 경비		
설명	사역자/고용자 예상	환급 경비로 책정된 금액
예상 업무 마일리지.	(마일)	해당 무
사역에 사용된 차량 경비를 산출하기 위해 마일리지에 IRS의 표준 비율을 곱하십시오( <a href="http://www.IRS.gov">www.IRS.gov</a> 방문).	\$	\$

여행 경비		
설명	사역자/고용자 예상	환급 경비로 책정된 금액
사역 관련 이벤트 참여로 인한 예상 여행 경비 (음식, 숙박 등등).	\$	\$

사역 경비		
설명	사역자/고용자 예상	환급 경비로 책정된 금액
설교 준비, 연구, 또는 교회 사역을 위한 자료(도서구매)에 대한 예상 경비	\$	\$

접대 경비		
설명	사역자/고용자 예상	환급 경비로 책정된 금액
교회 각종 모임을 주관하고 강사님을 초청하는 등, 집과 식당에서 접대 하는 것에 대한 예상 경비	\$	\$

사역 발전 경비		
설명	사역자/고용자 예상	환급 경비로 책정된 금액
평생 교육, 워크샵, 또는 교육 컨퍼런스에 참여함으로써 발생될 예상 경비	\$	\$

## 결과 보기

최신 전국 SBC 사례비 설문조사 결과 보기! 여러분의 지역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SBC 교회와 비교하여 여러분의 사역자와 직원용 사례비 계획안이 어떠한지 알아보십시오.  
[www.GuideStone.org/CompensationPlanning](http://www.GuideStone.org/CompensationPlanning)

### 제2항: 고용자 혜택 (상세한 내용은 9-11 페이지 참조)

의료보험		
설명	사역자/고용자 예상	혜택 제공을 위해 책정된 금액
당신의(적용 가능한 경우, 귀하 가족 포함) 의료보험의 예상 비용	\$	\$

생명보험		
설명	사역자/고용자 예상	혜택 제공을 위해 책정된 금액
당신의 생명보험의 예상 비용.	\$	\$

신체 장애 보험		
설명	사역자/고용자 예상	혜택 제공을 위해 책정된 금액
귀하 장애 보험의 예상 비용.	\$	\$

은퇴 플랜 적립		
설명	전년도 실재 적립금	적립금으로 책정된 금액
교회가 부담하는 403(b)(9) 은퇴 플랜 적립금	\$	\$

### 제3항: 개인 소득 (상세한 내용은 12 페이지 참조)

개인 사례비	
설명	교회가 책정한 금액
교회가 사역자/고용자에게 지불한 사례비	\$

주택 보조금	
설명	사역자에 의해 책정된 금액
내년도에 교회가 지정할 주택 보조금(사례비 이외), 적용 가능한 경우*	\$

사례비 인상		
설명	예	아니요
작년도에 사례비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예 또는 아니요를 선택해 주십시오.		

지불된 SECA 세금		
설명	사역자	보조 비용으로 책정된 금액
작년도 사례비에 대해 당신이 납부한 자영업(SECA) 세금 금액*	\$	\$

\*세금 법상 사역자로 인정되는 분에게만 적용됨.

# 제2단계: 사례비 책정 정책 서면화 하기

서면화 된 정책은 교회가 현재와 미래 해야 할 일에 기준을 마련하여 혼란을 예방합니다. 또한 사역자와 교회직원들이 해당 교회의 사례비에 대한 규정과 기대치를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책은 4가지 주요 영역을 다루어야 합니다.

## 1. 사역 관련 경비에 관한 정책을 명확하게 설명할 것.

사역 관련 경비는 사역자와 교회직원의 사례비와는 별도로 교회가 부담해야 합니다.

- ❖ 허용되는 업무 경비 Allowable business expenses (IRS 규정과 일치해야 함).
- ❖ 직원 기록관리 및 경비 계좌 보고에 관한 기대 사항.
- ❖ 마일리지 경비에 대한 환급 비율.
- ❖ 허용되는 컨퍼런스 및 컨벤션 경비.
- ❖ 책, 정기 간행물,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환급 금액(이외에도 누가 환급된 물품을 소유할지에 관한 사항도).

## 2. 고용자 혜택을 명확하게 정의할 것.

고용자에 대한 혜택은 사역자/교회직원의 사례비와는 별도로 교회의 재정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 ❖ 의료, 생명, 장애 보험.
- ❖ 교회가 적립하는 은퇴 적립금.
- ❖ 환급 받을 수 있는 교육 비용.

## 3. 개인 소득을 명확하게 설명할 것.

- ❖ 사례비와 주택보조금(주택보조금은 세금 법상 사역자에게만 해당).
- ❖ 사역자가 아닌 교회직원에게 대한 Social Security withholdings(상세한 내용은 제5단계의 "소셜시큐리티"항 참조).
- ❖ 세금 법상 사역자를 위한 "사회 보장세 보조금"(상세한 내용은 제5단계의 "소셜시큐리티"항 참조).
- ❖ 세금 법상 사역자가 요청할 경우 withholding을 기꺼이 찬성.
- ❖ 교회가 주택 보조금을 지정하는 방법(상세한 내용은 제5단계의 "주택 보조금"항 참조).
- ❖ 개인 심사 및 사례비 인상 절차.

## 4. 개인 정책에 관한 규정을 분명하게 명시할 것.

- ❖ 휴가.
- ❖ 병가 및 안식년 휴가.
- ❖ 외부사역 규약.
- ❖ 고용 요구조건.
- ❖ 직원 분류.
- ❖ 근무 시간 및 급여 기간.
- ❖ 휴대폰 및 컴퓨터의 업무 사용.

# 3 | 제3단계: 사역 관련 경비 제공

사역자와 교회 직원들이 사역을 해 나갈때 자연스럽게 사역과 관련된 경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러한 비용들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비들은 교회가 100% 지불해야 하며 사역자 또는 교회 직원의 개인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사역 관련 경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업무 목적의 차량 이용.
- ❖ 회의, 워크샵, 컨퍼런스.
- ❖ 책, 정기 간행물, 소프트웨어, 오디오, 또는 비디오 자료.
- ❖ 평생 교육 기회.
- ❖ 사역 관련 접대용 지급.

## 책임환급플랜(Accountable Reimbursement Plan, ARP)으로 사역 관련 경비 처리

ARP는 허용 가능한 사역 경비에 관련된 약관과 조건, 그리고 세금 규정을 설명하기 위해 교회가 세우는 플랜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플랜을 통하여 교회는 환급 예산을 지정하고 사역자 또는 교회 직원이 지출 내역 보고서를 제출하면 교회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지출금을 해당 사역자와 교회 직원에게 환급합니다. 또한 교회 직원들은 환급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러한 환급은 W-2 폼에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ARP의 요구조건

- ❖ 모든 경비는 반드시 목회자 또는 교회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 목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 ❖ 경비는 반드시 금액, 날짜, 장소, 업무 목적이 기재된 문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 문서는 경비 발생 후 60일 이내로 제출되어야 하며 초과 환급 금액은 120일 이내로 교회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 ❖ 교회는 IRS가 승인한 표준 마일리지 비율을 차량경비에 대해 적용하고 식사 및 숙박에 대해서도 IRS가 승인한 일일 경비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율들은 [www.irs.gov](http://www.irs.gov)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 사용되지 않은 책임환급플랜 금액은 보너스 또는 추가 수입으로 제공되서는 안됩니다.

## 간단한 3단계로 ARP 만들기

- 1 어떤 경비가 적용될 지 결정하시고 플랜 계획안을 세우십시오(15 페이지의 책임환급플랜 예제 참조). 다음, 개인 소득과 별도로 이러한 경비를 처리하기 위해 교회가 따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지 결정하십시오. 적용 가능한 경우, 각 항목의 지난년도 지출내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 및 교회 직원들에게 비용이 발생하고 60일 이내로 경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십시오(15 페이지의 경비 보고서 예제 참조). 구입한 물품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차량 경비의 경우 마일리지가 보고되어야 합니다.
- 3 모든 승인된 경비에 대해 최소 한 달에 한 번 목회자와 교회 직원에게 환급을 지불하십시오(이 환급은 개인 소득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예상되는 경비에 대해 사전 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사전 지불된 금액 중 사용되는 않은 금액은 반드시 120일 이내로 교회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 "급여 감소를 통한 환급 방안"에 대한 경고

교회가 경비 금액으로 인해 목회자 또는 교회 직원의 개인 소득을 줄이지 않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조세 규정 제1.62(d)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임금 감소는 비책임 준비 방안으로 인정되며, 교회는 목회자 또는 교회 직원의 *Form W-2*에 이러한 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역자와 교회직원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제4단계: 고용자 혜택 제공

좋은 혜택 플랜에는 목회자를 위한 은퇴 플랜 적립금, 의료, 생명, 장애 보험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플랜을 제공하는 것은 교회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이직률을 낮춰 새로운 직원들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플랜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 세금 혜택

### 세금 절감 효과

교회는 여러가지 보험을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고 혜택으로 고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고용자들의 그룹 건강 보험, 장애 보험, \$50,000까지의 생명보험을 직접 제공하거나 환급할 수 있고 이 금액은 세금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교회가 고용자들의 403(b) 은퇴 계좌에 적립하는 금액은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건강보험법 개혁안의 영향:** 2014년 1월 1일부터 교회는 더이상 고용자들의 개인 건강 보험(individual medical policies)을 비과세 항목(tax-free basis)으로 환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룹 건강 보험에 대해서는 의료비 환급 계좌(Health Reimbursement Arrangements, HRAs), 고용주 지불 플랜(Employer Payment Plans, EPPs), 특정 125 항 “카페티리아” 플랜 통해서 종전과 같이 직원들에게 환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세금 혜택을 포함한 이 플랜들을 사용하시면 고용주와 고용자들이 비용을 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 법적인 규제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역단체들이 이런 플랜을 사용하실 때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하에 플랜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런 방법들은 세법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자들과 교회 직원들은 합법적으로 가장 적은 세금을 낼수 있습니다.

## 보험 혜택

### 교회에 대한 보호 제공

목회자 및 교회 직원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교회에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고,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경우 이들의 가족들에게 보험이 없는 것은 큰 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역자와 교회 직원, 그리고 이들의 가족들에게 보호와 안정을 제공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이들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보험을 포함한 온전한 혜택을 제공할 때 재능과 자격을 갖춘 직원들을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단체가 사역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적절한 보험을 직원에게 제공

가이드스톤은 교회와 사역 단체들의 사역자와 직원들에게 다양한 건강, 생명, 상해, 치과, 장애 보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사역 단체들은 가이드스톤이라는 단일 기관을 통해서 모든 고용주 혜택을 제공할 수 있고 저희는 여러분을 돕는 확실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  
건강 보험 개혁  
법에 대해  
잘 알아두기

가이드스톤은 건강 보험 개혁에 대한 여러분의 조력자입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사역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 조항들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면 [www.GuideStone.org/HealthReform](http://www.GuideStone.org/HealthRefor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건강 보험법 개정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받기 원하시면 이메일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이드스톤의 보험은 사역자와 교회 직원들에게 보호와 유동성을 제공해 드리며 그들이 다른 곳으로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되시면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동일한 보험을 같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료보험 플랜과 부합하는 유연소비계좌(Flexible Spending Account) 또는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를 설정하시면 사역자 및 교회 직원들이 내셔야 하는 소득세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www.GuideStone.org/ConsumerDirected](http://www.GuideStone.org/ConsumerDirected)로 방문하여 주십시오.

가이드스톤의 건강보험과 생명보험에 대해서 더 상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중부 표준시로 주중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1-855-550-5535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또한 [www.GuideStone.org/Korean/Insurance](http://www.GuideStone.org/Korean/Insurance) 방문하시면 온라인 상의 정보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은퇴 플랜 혜택

### 사역자들의 미래를 준비함

사역자들은 그들의 부르심에 있어서 은퇴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는 사역에서 떠난 후의 삶을 살아갈 만한 재정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자원은 가족들을 돌보고, 선교나 새로운 교회를 개척등과 같이 여러 사역을 하는데 사용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재정적 자원을 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이드스톤에서 제공하는 403(b)(9) 플랜과 같은 은퇴 플랜을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사역자와 교회 직원들에게 이런 플랜을 제공해야 하고 세금 법상 고용주로서 사역자들의 은퇴준비를 위해서 적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이드스톤은 사례비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주 은퇴 기여금으로 적립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교회는 사역자들이 자신의 사례비에서 추가로 적립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사역자들만을 위한 플랜 제공

가이드스톤의 403(b)(9) 은퇴 플랜은 오직 교회와 사역 단체를 위해서 디자인 되었습니다. 교회로부터 납세소득을 받는 사역자라면 누구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로부터 W-2 소득을 받는 사역자가 아닌 교회 직원들(비서, 관리인, 주일학교 근무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플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고용자의 비과세 적립금(Employees' tax-sheltered contribution)은 납세 소득을 줄임으로 즉각적으로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더 나아가서 적립금과 그 투자수익이 세금 연기(Tax-deferred)의 방식으로 찾으실 때까지 증액됩니다.
- ❖ Roth 적립금의 투자수익은 합당한 기준에 부합할 때 비과세 대상으로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법상 사역자는 자신이 비과세로 적립하는 금액에 대해서 SECA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 세금 법상 사역자는 자신의 은퇴 혜택의 최대 100%까지 주택 보조금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은퇴플랜에 참여하시면 여러 전문가가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를 통해서 분산투자자와 잘 구조화된 포트폴리오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 모든 뮤추얼 펀드는 기독교의 가치에 맞게 투자 회사를 선별하고 가이드스톤이 승한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투자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저희의 은퇴플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동봉된 추가 자료 양식을 보내주시거나, 중부 표준시로 주중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855-550-5535로 전화해 주십시오. 또한 [www.GuideStone.org/Korean](http://www.GuideStone.org/Korean)으로 가시면 온라인에서 정보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남침례교회의 교회 은퇴 플랜

가이드스톤은 남침례교회들이 매칭(Matching)과 보호혜택(Protection Benefits)을 받으실 수 있는 교회은퇴플랜을 제공합니다. 연간 예산이 \$75,000 이하이며 자격을 갖춘 남침례교회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추가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침례교회에 속하셨으면,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 저희 가이드스톤에 연락 주십시오.

\* 위의 혜택들은 가이드스톤과 침례교 주총회로부터 제공됩니다. 가입자격과 제공되는 혜택 종류는 주총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www.GuideStone.org/SBCChurchBenefits](http://www.GuideStone.org/SBCChurchBenefits)로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가이드스톤에 문의해 주십시오.

### 403(b) 플랜 규정에 관한 공지

IRS는 2009년 1월 1일에 추가 규정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 규정들은 모든 403(b) 플랜들에  
영향을 미치지만 다행스럽게도 규정을 따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이해하고 준수하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찾아보려면 [www.GuideStone.org/PlanRegs](http://www.GuideStone.org/PlanRegs)  
로방문해 주십시오.

# 5 | 제5단계: 개인 소득 결정

사역자와 교회직원들의 소득을 결정할 때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역 관련 경비 및 혜택 비용은 개인 소득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 책임과 경험

사역에 부름을 받은 분들은 부를 쌓기 위해 그 부름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들이 부당한 사례비를 받으면서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사역자들의 훌륭한 섬김을 인정하여 인상해 드리는 적절한 예우를 부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적절한 사례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험과 지위가 비슷한 다른 전문가들의 소득을 고려해 보십시오. 최신 SBC 사례 설문조사를 검토해 보는 것은 적절한 사례비를 책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www.GuideStone.org/CompensationPlanning](http://www.GuideStone.org/CompensationPlanning)에서 설문조사에 대한 링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물가인상

매년 사례비를 검토할 때 교회는 반드시 물가인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물가인상은 연간 평균 3%정도입니다. 매년 여러분들의 사역자들과 교회 직원들의 사례비가 물과 상승률에 맞게 조정되지 않는다면, 이들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사례비는 점점 더 구매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 소셜시큐리티

사역자가 아닌 교회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교회는 해당 교회가 소셜시큐리티 세금의 고용주 부분을 납부하셔야 함을 유의하십시오. FICA 세금의 고용자 부분은 교회가 직원들의 사례비에서 withholding해야 합니다. 반면에 세금 법상 사역자는 SECA 세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러한 분들 본인이 반드시 이 세금의 전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이드스톤은 해당 목회자가 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할 추가 소득을 교회가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때때로 이것은 "소셜시큐리티 보조혜택(Social Security Offset)"이라고 불리며 일반적으로 SECA 세율의 절반과 동일합니다. 교회가 이런 혜택을 사역자에게 제공할 때 이 금액은 사역자의 Form W-2에 반드시 납세 소득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 주택 보조금(세금 법상 사역자들만 이용할 수 있음)

교회가 소득의 일부를 주택 보조금으로 지정하면 주택을 소유 또는 임대하는 사역자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택에 거주하는 사역자도 지정 가능한 주택 경비가 있을 시 교회에 의해 지정된 주택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택 보조금을 사후(Retroactively)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보조금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동봉된 Additional resources 폼을 사용하여 저희의 Ministers' Tax Guide를 신청해 주시거나, [www.GuideStone.org/TaxGuide](http://www.GuideStone.org/TaxGuide)에 가시면 온라인 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주택 보조금 지정 방법

- 1 목회자는 교회에 예상 되는 주택 경비를 제출해야 합니다(16 페이지에 있는 목회자의 예상 주택 경비 양식 참조).
- 2 교회는 목회자에게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공식적으로 사전에 해당 목회자의 주택 보조금을 지정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년 행해져야 합니다. 교회가 매년 주택 보조금을 지정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교회는 공식적인 교회의 결정에 의해 변경될 때까지 앞으로 모든 해 동안 적용되도록 지정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안전망" 지정이라 부릅니다. 교회는 이 결정을 해당 교회 의사록에 기록하고 해당 목회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주택 보조금으로 지정된 금액은 그 해의 어느 때라도 변경되어질 수 있지만 사후(retroactively)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주택 보조금으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납세자로서 목회자는 자신의 소득을 제대로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소유의 사택에 거주하는 목회자는 주택 소유권(home equity)을 축적할 수 없으므로 많은 분들이 은퇴후 어떻게 주택비를 감당할까 걱정 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목회자의 403(b)(9) 은퇴 계좌에 추가 기여(법정 한도내에서)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 보조금의 혜택 및 요구조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www.GuideStone.org/HousingAllowance](http://www.GuideStone.org/HousingAllowance)로 방문하시거나 주중 중부 표준시로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855-550-5535**로 전화해 주십시오.

# 제6단계: 사례비 책정 계획안 완료하기

새로운 회계 연도를 위한 온전한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하시려면 본 페이지의 뒷면에 있는 워크시트를 이용하십시오. 본 워크시트는 사례의 세 가지 범주(경비, 혜택, 개인 소득)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범주를 서로 합하는 것은 단일 항목 접근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뒷면에 워크시트를 잘라내어 여러 장 복사해 놓으시면 필요를 따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을 사용할 때 교회의 연방 보고 규정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체크 리스트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 연방 정부로부터 고용주 ID 번호(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받기 ([www.IRS.gov](http://www.IRS.gov)로 가서서 이 번호를 받으십시오).
- ❖ 각 교회 근무자가 고용자인지 자영업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 ❖ 각 근무자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보유해 놓으십시오.
- ❖ 각 고용자들이 *Form W-4*를 작성하도록 하십시오(목회자는 의무적인 withholding 으로부터 면제되지만 자발적으로 양식 작성을 선택할 수 있음).
- ❖ 각 고용자의 납세 소득을 계산하십시오.
- ❖ 각 사역자가 아닌 직원들로부터 withholding 해야 할 소득세 금액을 계산하십시오.
- ❖ 사역자가 아닌 직원들로부터 FICA 세금을 withholding 하십시오.
- ❖ 모든 급여 예금 규정을 따르십시오.
- ❖ 분기별로 *Form 941*을 제출하십시오.
- ❖ 모든 고용자에 대해 *Form W-2*를 준비하십시오(목회자 포함).
- ❖ 교회로부터 한 해 동안 \$600\* 이상의 비고용자 사례를 받는 자영업인에 대해서 *Form 1099-MISC*를 작성해 두십시오.
- ❖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가 요구하는 추가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연간 목회자 조세 안내서에는 이러한 규정과 또 다른 중요한 연방 규정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봉된 추가 자료 양식을 이용하거나 또는 GuideStone으로 전화하여 안내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www.GuideStone.org/TaxGuide](http://www.GuideStone.org/TaxGuide)로 가시면 온라인에서 안내서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책자가 담고 있는 과정들이나 자료들에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 가이드스톤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부 표준시로 주중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855-550-5535**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또한 [www.GuideStone.org/Korean/contact](http://www.GuideStone.org/Korean/contact)로 가서서 언제든지 이메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는 [www.IRS.gov/form1099misc](http://www.IRS.gov/form1099misc)를 방문해 주십시오.

아래  
주소를 방문하여

[www.GuideStone.org/Korean](http://www.GuideStone.org/Korean)

본 자료 및 기타 다른 유용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살펴보십시오.

# | 사례 책정 계획 요약서

여러분은 이제 사례 책정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자와 교회직원에게 받은 사례비 책정 검토안(4-5 페이지)을 살펴 보십시오. 충분하지 않게 지원되어서 올해 예산에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항목들을 점검하십시오.

새로운 회계 연도를 위한 온전한 사례비 책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본 워크시트를 사용하십시오.

주의: 본 워크시트는 보상의 세 가지 범주들이 서로 섞여지지 않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된 것입니다. 이 세가지 범주가 함께 더해지면 단일 항목이나 패키지 접근법으로 사례를 책정하는 것과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은 비효율과 왜곡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세가지 사례의 범주들을 예산과 별도로 다른 페이지에 작성해 두시면, 이 모든 것을 한 항목에 두려고 하는 것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역 관련 경비(소득이 아님)		
1. 차량		\$
2. 컨벤션/컨퍼런스		\$
3. 책, 정기 간행물, 소프트웨어		\$
4. 평생 교육		\$
5. 접대		\$
피고용인 혜택(소득이 아님)		
1. 생명 및 건강 보험		\$
a. 의료		\$
b. 장애		\$
c. 생명보험		\$
d. 개인상해		\$
e. 치과		\$
2. 403(b)(9) 은퇴 플랜 기여		\$
개인 소득		
1. 개인 급여		\$
2. 주택 보조금		\$
3. 소셜시큐리티 보조비	(과세 대상)	\$

# 예제 양식 및 보고서

## 예제: 책임환급플랜 (Accountable Reimbursement Plan)

- 1 이에 교회는 모든 사역자들과 직원들을 위해서 책임 환급 플랜을 세우며, 이 플랜은 다음과 같은 약관과 조건을 통하여 적용되는 세금 규정을 준수합니다.  
교회는 사역자 또는 교회 직원들에 의해 발생된 합리적인 사역 관련 업무 경비만을 환급할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비용만 포함됩니다.
  - ❖ 업무상 차량 이용. 최대 현 IRS 표준 마일리지 비율까지.
  - ❖ 출장: 출장의 교통편, 숙박, 식사.
  - ❖ 컨벤션, 컨퍼런스, 워크샵 경비.
  - ❖ 평생 교육 경비.
  - ❖ 사역 또는 직무에 관련된 경우 구독료, 책, 소프트웨어.
  - ❖ 사역과의 연관성이 확실할 경우의 환대/접대 경비.
- 2 사역자 또는 교회 직원은 60일 이내로 서면으로 허가 경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각 경비에 대한 금액, 날짜, 장소, 업무 목적, 접대 받은 이와의 업무 관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3 사역자 또는 교회직원은 120일 이내로 실제 사역 경비를 지불하고 남은 사전 지급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4 이러한 책임 제도하에 교회는 환급된 금액을 사역자 또는 교회직원의 *Form W-2*에 과세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역자 또는 교회직원은 환급 금액을 본인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 예제: 경비 보고서

고용자 이름: Rev. John Kim			
달: 1월    년: 2012			
날짜	경비 세부 내역	업무 목적	금액
1월 17-18일	컨퍼런스 장소까지의 마일리지	마일리지(457x.56)	\$ 255.92
1월 17일	컨퍼런스에서의 식대	식대	\$ 53.25
1월 17-18일	호텔	숙박	\$ 120.00
1월 17일	주일학교 선생님 지도	사역 경비/책	\$ 53.00
		소계	\$ 482.17
		선불 차감	\$ 200.00
		<b>총 환급 액수</b>	<b>\$ 282.17</b>

# 예제 양식 및 보고서

## 예제: 목회자의 예상 주택 경비 양식

받는이(교회): \_\_\_\_\_

보낸이(목회자): \_\_\_\_\_

주택 보조금 년도: \_\_\_\_\_

항목	금액
1. 주택 다운페이먼트	\$
2. 주택 구입 또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주택 융자금의 월 불입액(원금 및 이자 포함)	\$
3. 부동산 세금 (Property Taxes)	\$
4. 주택 보험	\$
5. 관리비(전기, 가스, 수도, 쓰레기 수거, 시내 전화요금)	\$
6. 가구 및 가전 제품(구매 및 수리)	\$
7. 구조 수리 및 리모델링	\$
8. 정원 관리 및 개선	\$
9. 관리 항목(해충방역 등)	\$
10. 주택소유자협회(HOA) 회비	\$
11. 기타:	\$
	\$
	\$
	\$
<b>총 경비</b>	<b>\$</b>

목회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 \_\_\_\_\_ / \_\_\_\_\_

# 예제 양식 및 보고서

## 예제: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보내는 주택 보조금 공지서

받는이(목회자의 이름): \_\_\_\_\_

교회: \_\_\_\_\_

회의일, \_\_\_\_ / \_\_\_\_ / \_\_\_\_ (날짜)에서 열린 재정회의에서 귀하의 \_\_\_\_\_ 년 주택 보조금이 공식적으로 지정되었으며 다음 금액으로 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_\_\_\_\_. 따라서, \$ \_\_\_\_\_ 의 총 지불금이 \_\_\_\_\_ 년에 (공식적인 교회의 조치에 의해 변경될 때까지 향후 지속) 대한 귀하의 주택 보조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주택이 제공될 경우, 추가:) 또한 귀하는 다음 주소에 위치한 주택을 무료로 임대하게 됩니다.

해당 년: \_\_\_\_\_. 관리비는 다음에 의해 지불될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

이 조치는 교회 의사록에 기록됩니다.

연방 소득세를 신고하실 때, 귀하께서는 면세 가능한 주택경비의 기록들을 잘 보관하셔서 소득에서 공제한 금액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귀하께서는 SECA 조세 목적상 주택 보조금을 소득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소득에서 얼마나 주택보조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한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따름으로 정확하게 소득을 보고하는 것은 납세자로서 귀하의 의무입니다. 제한사항 및 주택에 관한 정보는 [www.GuideStone.org/HousingAllowance](http://www.GuideStone.org/HousingAllowance) 를 참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무관 서명: \_\_\_\_\_ (날짜) \_\_\_\_ / \_\_\_\_ / \_\_\_\_

# “잘하였다..”

마태복음 25장 21절

**Do well.** 사역 단체로서 여러분들이 갖은 모든 자원은 더 높은 부르심을 위해 헌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사역, 그리고 여러분의 사람들까지. 여러분들은 가이드스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자들에게 온전하게 그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역이 지향하는 가치에도 부합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Do right.** 가이드스톤은 1918년에 창립된 후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의 목회자, 직원과 신학생의 재정적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이드스톤은 기독교 가치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세계 정상급, 최고 수준의 은퇴 및 보험 플랜을 제공합니다.



# 추가 자료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받고 싶으신 무료 자료를 선택하십시오. 작성된 양식을 다음과 같은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Business & Marketing - Churches  
 GuideStone Financial Resources  
 2401 Cedar Springs Road  
 Dallas, TX 75201-1498

GuideStone은 다음과 같은 재정 관련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받고 싶으신 자료를 체크하신 후에 저희 가이드스톤으로 보내주시거나, 855-550-5535으로 전화하시면 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례비 및 사역비 책정 계획 안내서 책자.  
필요한 수량: \_\_\_\_\_
- 교회 안내용 403(b)(9) 은퇴 플랜(사역자, 교회직원용 은퇴 플랜).
- 개척/교회 지원 기금 정보(연간 \$75,000 이하 예산의 남부침례교회용).
- 보험 플랜 옵션(의료, 생명보험, 상해, 치과, 장애 포함).
- 목회자 조세 문제 - 일반적 조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는 책자.  
필요한 수량: \_\_\_\_\_
- 목회자 조세 안내서 - 목회자를 위해 준비된 본 연간 안내서에는 교회에 대한 중요한 연방 요구사항에 대한 특별한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수량: \_\_\_\_\_
- 교회 보험(손해 및 상해 보험)과 본인의 목회를 여러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이름: \_\_\_\_\_

교회 직책: \_\_\_\_\_

교회명: \_\_\_\_\_

귀하의 교회는 남침례교단(Southern Baptist Convention, SBC)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요

교회 주소: \_\_\_\_\_

시: \_\_\_\_\_ 주: \_\_\_\_\_ 우편번호: \_\_\_\_\_

낮시간 전화번호: ( \_\_\_\_\_ ) \_\_\_\_\_ 교회 전화번호: ( \_\_\_\_\_ ) \_\_\_\_\_

GUIDESTONE은 도와드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사례비 및 사역비 책정 계획 안내서를 살펴보고  
***www.GuideStone.org/Korean*** 에서 여러 유용한  
정보들을 찾아 주십시오.



2401 Cedar Springs Road, Dallas, TX 75201-1498  
1-888-98-GUIDE • [www.GuideStone.org](http://www.GuideStone.org)